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2-136
----------	----------

발의연월일 : 2022. 11. 4.

발 의 자 : 박성호(1명)

찬 성 자 : 전철규, 이충현, 고찬양,
이종숙, 강선영(5명)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약칭: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및 시행(2022.5.19.)에 따라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해충돌방지법과 유사·중복되는 아래 7개 규정 및 관련 서식(별지 제1호~제4호 및 제12호) 삭제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현행 제4조)
-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현행 제5조)
-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현행 제6조)
- 가족 채용 제한(현행 제7조)
- 수의계약 체결 제한(현행 제8조)
-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현행 제15조)
-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현행 제23조)

나. 제7조 ‘가족 채용 제한’ 규정의 삭제로 인해 동 규정에 포함되어 있던 ‘산하기관’ 용어 설명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다른 관련 조항의 ‘산하기관’ 용어를 정비함(안 제17조)

다. 청탁금지법에 부합하도록 관련 용어 정비

- ‘채용·승진·전보 등’에서 ‘모집·선발·채용·승진·전보 등’으로 정비(안 제13조)
-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에서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 범위를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기간 중에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안 별표 1)

-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규정을 청탁금지법에 근거할 수 있도록 용어 정비(안 별표 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나. 협조부서 : 의회사무국

다. 입법예고 : 2022. 11. 7. ~ 2022. 11. 14. 결과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채용·승진·전보”를 “모집·선발·채용·승진·전보”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호 중 “전가”를 “전가(轉嫁)”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강서구 또는 강서구의 산하기관”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강서구 또는 강서구 산하기관”을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가. 강서구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강서구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강서구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5조 중 “사무처”를 “사무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받은”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5조 및 제23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6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8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

게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0조제1항 관련)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부정척탈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40만원

나. 「부정척탈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

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직무관련자”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가.·나. (생략)</p> <p><신설></p> <p style="padding-left: 20px;">2. (생략)</p> <p>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p> <p style="padding-left: 20px;">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이하 “안전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p>	<p>제2조(정의) ----- -----.</p> <p>1. ----- ----- ----- ----- ----- ----- ----- ----- ----- -----</p> <p style="padding-left: 20px;">가.·나. (현행과 같음)</p> <p>다. <u>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u></p> <p style="padding-left: 20px;">2. (현행과 같음)</p> <p><삭제></p>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전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

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
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
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
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0 이상인 사업자

나.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
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
0 이상인 사업자

다.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
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
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의원이 직무관련자와 300만
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8. 학연, 지연, 종교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

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9. 최근 2년 이내에 안건심의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10.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의원이 직무 수행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회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결·의견 제출 등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 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

<삭 제>

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 관·관리해야 한다.

제6조(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 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의회에 직접

<삭 제>

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의회의 상대방을 대리
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
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
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
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
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
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
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의
회, 강서구 집행기관 및 강서구
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
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삭 제>

제15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생략)
2. 의회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그 지방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강서구 또는 강서구의 산하 기관에 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신설>

<삭제>

제17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

1. (현행과 같음)
2.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가. 강서구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강서구 또는 강서구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3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강서구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강서구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4. -----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

<삭 제>

로 신고해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 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 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

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전심의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5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제25조(성희롱 금지) -----

----- 사무국 -----

-----.

제27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

-----.

1. -----
--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
--

2. (생략)

② ~ ⑥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삭 제>

■ [별지 제1호 서식] (제4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	-----

신고인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관련 직무	(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 감사·조사, 4. 기타) *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

직무관련자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	--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2호 서식]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 [별지 제12호 서식] (제23조제1항, 제24항 및 제4항 관련)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신 고 사 함			
<input type="checkbox"/> 금전 차용		<input type="checkbox"/> 금전 대부	
거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여부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월)		거래원인	
<input type="checkbox"/> 불특정 계약		<input type="checkbox"/> 공사 계약	
<input type="checkbox"/> 용역 계약			
거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여부		계약체결일	
거래금액		거래원인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업무협)무관(일치협)(이었던 자)	
직무관련 여부		계약체결일	
대상		거래 금액	
거래원인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 소명자료 첨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 (제출용지))

<삭 제>

□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 처분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른다.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5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가액 범위"를 별표 2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장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1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장이 정하는 가액 범위"를 별표 2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3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1조제3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收受)를 금지하지 않는 금품등의 항목에 공직자의 청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추가할 수 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 ② 생략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이하 생략)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

-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이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를 말한다.